#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29

발의연월일: 2022. 10. 4.

발 의 자:김도읍・김미애・박수영

서병수 · 안병길 · 이주환

전봉민 · 정동만 · 조경태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 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 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.

전염병,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,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상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(2022. 6. 기준) 및 개별 사업체수(2020. 12. 기준)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.

이에 부산광역시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부산광역시 지역 주민

및 기업이 회생·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,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별표 1 및 별표 10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73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부산가정법원란 다음에 부산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
--------------

별표 10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란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부산회 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산 부산	부산광역시
-------	-------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으로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일 전날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.